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가단28735 구상금

원 고 [redacted] 주식회사 [redacted]
서울 [redacted]
송달장소 대구 [redacted]
대표이사 [redacted]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1. 한국도로공사 [redacted]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대표자 사장 [redacted]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2. [redacted] 주식회사 [redacted]
서울 [redacted]
송달장소 대구 [redacted]
지점)
대표이사 [redacted]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09. 8. 13.

판 결 선 고 2009. 10.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574,368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사이에 [REDACTED]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07. 2. 2.부터 2008. 2. 2.까지로 정하여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REDACTE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소외 B과 사이에 [REDACTED] 25톤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07. 10. 12.부터 2008. 2. 15.까지로 정하여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한국도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고속국도법 제6조에 따라 아래의 사고가 발생한 고속국도 제12호선 중 88올림픽선(이하 '이 사건 고속국도'라 한다)을 점유·관리하는 자이다.

나. 2007. 12. 22. 16:50경 경북 고령군 성산면 기족리에 있는 이 사건 고속국도 상행선 교서기점 약 17km 지점에서 일어난 별지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

다)로 인하여 위 망 C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피해차량은 수리비 등 2,130,59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되었다.

다. 위 망 C의 유가족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원고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가단8816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2009. 3. 9. 위 망 C의 유가족과 소외 회사에 합계 101,815,920원을, 같은 달 23.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회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았던 소외 [REDACTED] 변호사에게 4,620,000원(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기중기는 고속국도법 제9조 제1항, 제2조 제3호, 고속국도법 시행령 제1조의2(이하 '이 사건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고속국도를 출입·통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고속국도관리자인 피고 공사는 2007. 12. 22. 16:00경 경북 고령군 쌍림면 고곡리 소재 고령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받고 이 사건 기중기로 하여금 이 사건 고속국도를 출입·통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 B은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건설기계 중 이 사건 고속국도를 운행할 수 있는 것보다 전장이 더 길고, 전폭이 더 넓으며, 전고가 더 높은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위 망 C의 전방 시야를 차단함으로써 위 망 C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기중기와의 충돌을 피하여 갓길에 급정지하던 이 사건 가해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위 A의 과실과 피고 공사와 위 B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각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공사와 위 B은 위 A과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망 C과 그의 유가족 및 소외 회사의 손해액 합계 101,815,92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원고 회사만이 위 망 C의 유가족과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위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위 A과 피고 공사와 위 B이 공동면책되었기 때문에, 원고 회사는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 공사와 위 B의 보험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공동면책된 금액으로서 위 손해배상금 전부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소송비용 중 각 피고 공사와 위 B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구상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A과 피고 공사와 위 B의 과실의 정도에 따른 분담 부분의 비율은 최소한 60%(위 A): 40%(피고공사/위 B) 정도는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574,368원(= 40% × 106,435,920원(= 위 손해배상금 101,815,920원 + 이 사건 소송비용 4,620,000원))과 이에 대한 법정 이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 공사와 위 B의 각 잘못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먼저, 설령 위 B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기중기가 아니라 이 사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고속국도를 출입·통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 중 하나인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위 망 C로서는 위 25.5톤 덤프트럭에 의하여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로 여전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위 두 건설기계의 제원을 비교해 볼 때, 삼성 25톤 기중기는 ‘전장 11,840mm×전폭 2,149mm×전고 3,420mm’이고,¹⁾ 현대 25.5톤 덤프트럭은 ‘전장 8,695mm×전폭 2,495mm×전고 3,210mm’로서, 전고는 위 기중기가 210mm 더 높지만 전폭은 오히려 위 덤프트럭이 346mm 더 넓기 때문이다²⁾).

(3) 나아가, 이 사건 관계법령의 보호목적은 이 사건 고속국도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도로교통법 제1조 참조) 이 사건 고속국도의 구조관리 및 보전 등 그 시설의 정비를 도모함에 있으므로(고속국도법 제1조 참조), 비록 피고 공사와 위 B이 원고 주장과 같은 각 잘못을 저지른 것을 계기로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침해된 이 사건 관계법령의 보호범위 안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즉, 침해된 이 사건 관계법령은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라는 결과를 피고 공사와 위 B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³⁾

1) 이 사건 소장 5쪽 참조

2) http://blog.daum.net/_blog/ArticleCateList.do?blogid=0KRnZ&CATEGORYID=544033&dispkind=B2203#ajax_history_0 참조

3)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34891 판결도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이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보호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가사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4) 마지막으로,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앞차에 의하여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4) 이 사건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위 망 C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상황에 맞추어 속도를 적절히 줄이고(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앞서 진행하던 이 사건 기중기의 최고속도는 시속 65km 정도에 불과하므로 5) 위 망 C로서는 미리 법정 제한속도보다도 더 감속하여 서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전방시계의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기중기와의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는 등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바로 이 때문에 이 사건 소송의 판결에서도 위 망 C의 과실비율을 10%로 보아 과실상계를 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경 _____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법리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4)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005 판결 참조.

5) <http://blog.naver.com/ys867?Redirect=Log&logNo=140049446846> 참조.

(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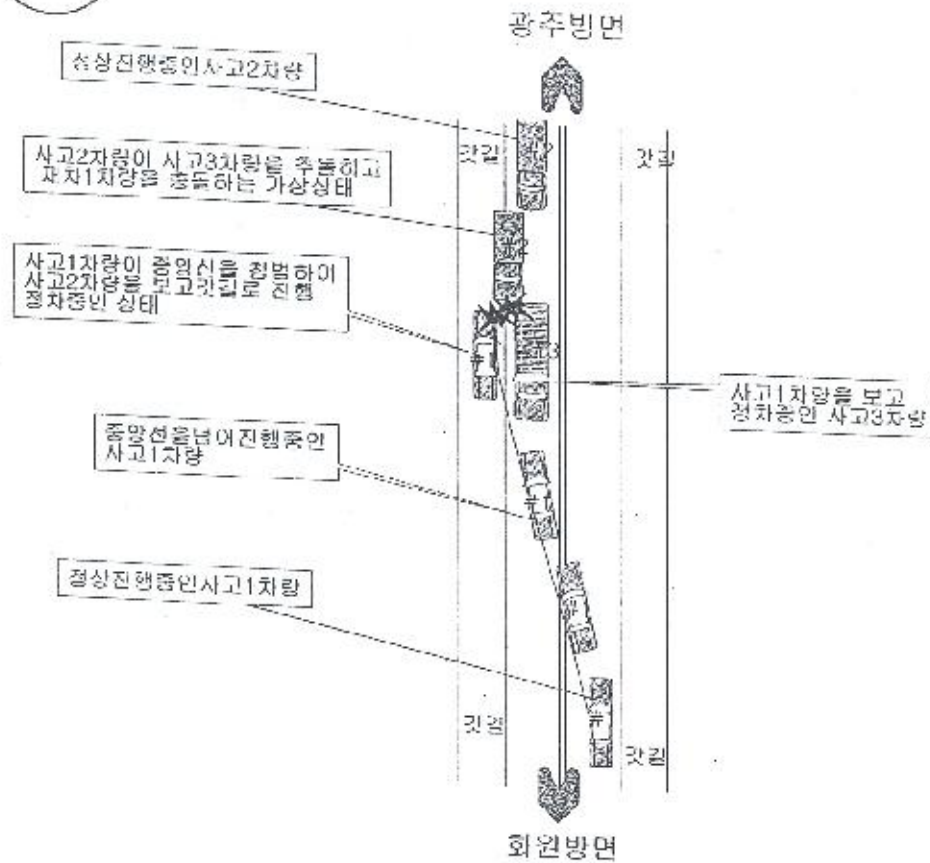
이 사건 사고

위 A은 2007. 12. 22. 16:50경 업무로서 이 사건 가해차량(아래 발생개요에서 #1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성산면 기족리에 있는 이 사건 고속국도 상행선 고서기점 17km 지점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구 쪽에서 광주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이 사건 기중기(아래 발생개요에서 #3 차량)를 운전하는 위 B이 위 A 운전의 이 사건 가해차량을 보고 속도를 줄이면서 정지하였으나, 이 사건 기중기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소외 C이 운전하는 소외 주식회사 삼일포장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REDACTED] 점보타이탄 2.5톤 14척 중형 화물차(아래 발생개요에서 #2 차량, 이하 '이 사건 피해 차량'이라 한다)가 미처 정지하지 못해 이 사건 피해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기중기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게 한 다음, 위 A이 이 사건 기중기를 피해 왼쪽으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앞 부분으로 위 C 운전의 이 사건 피해차량의 앞 부분을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위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을 현장에서 좌측하지개방성골절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끝.

사고현장약도

(축소비율 : 1/400)

방향표



발
생
개
요

2007. 12. 22. 16:50경 88고속도로 상행선 170킬로미터 노상을 사고1차량은 화원방면에서 고령방면으로 진행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사고1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갓길로 진행중 마주오던 사고3차량이 충돌을 피하려고 제동을 하는 순간 그 뒤를 따라 진행하던 사고2차량이 전면부로 사고3차량 후면부를 추돌한 후 재차 사고1차량 전면부를 충돌한 사고임